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감리원 배치현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 일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고인 (용역업자)	상 호		신고(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공사업자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용역명 및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 . .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	
감리원 배치현황 (또는 변경 전)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배치변경	변경사유 :					
2이상의 공사 감리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용역명 (총공사금액)	배치기간(일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  ]  
 배치현황신고 [  ]배치현황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발 주 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li> <li>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li> <li>3.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4.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5.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li> <li>2.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작성 방법**

1.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2. 연면적 및 규모: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3. "건축허가번호" 및 "건축허가일자"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4. 총공사금액: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총괄(상주), 보조(상주),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기재
  - 다.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번호 기재
  -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예정기간/예정일수)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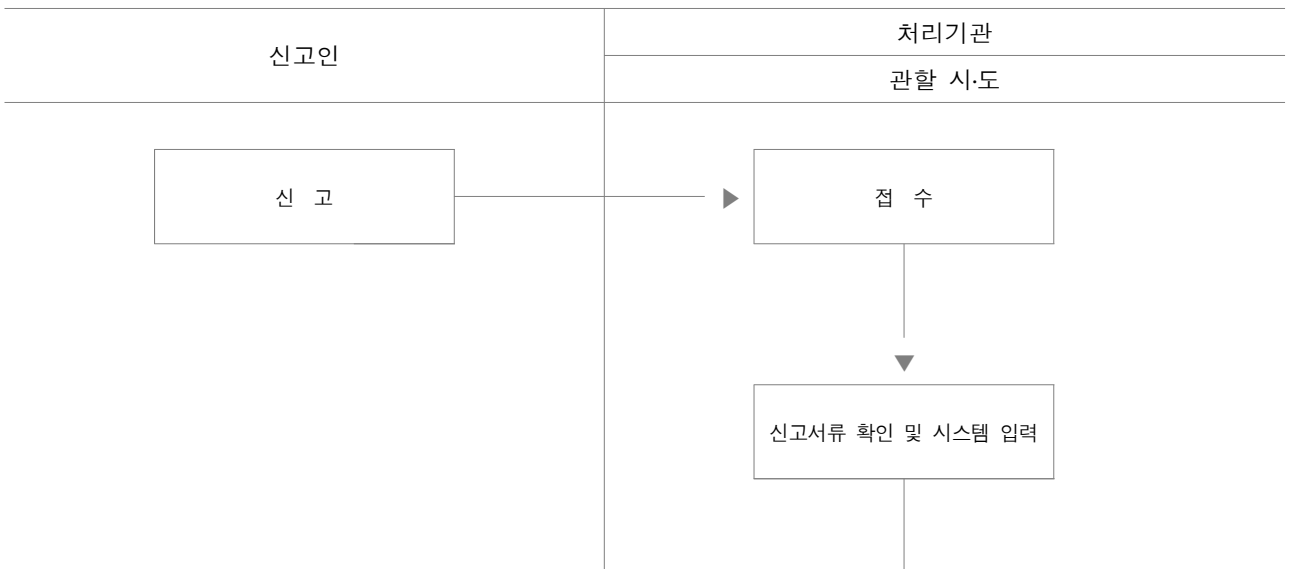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3서식]

## 감리원 배치확인서

(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	------	------	----------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고인 (용역업자)	상 호	신고(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공사업자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용역명 및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_층, 지상_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 .	준공예정일자	. . .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

감리원 배치현황 (또는 변경 전)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배치변경	변경사유 :				

2이상의 공사 감리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용역명 (총공사금액)	배치기간(일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변경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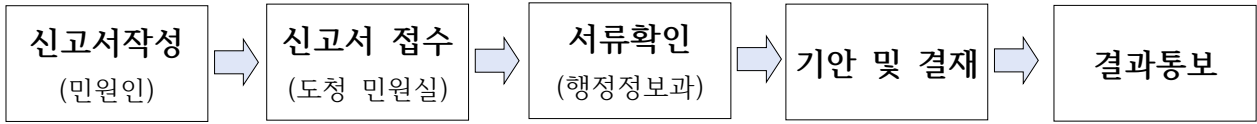
직인

# 1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민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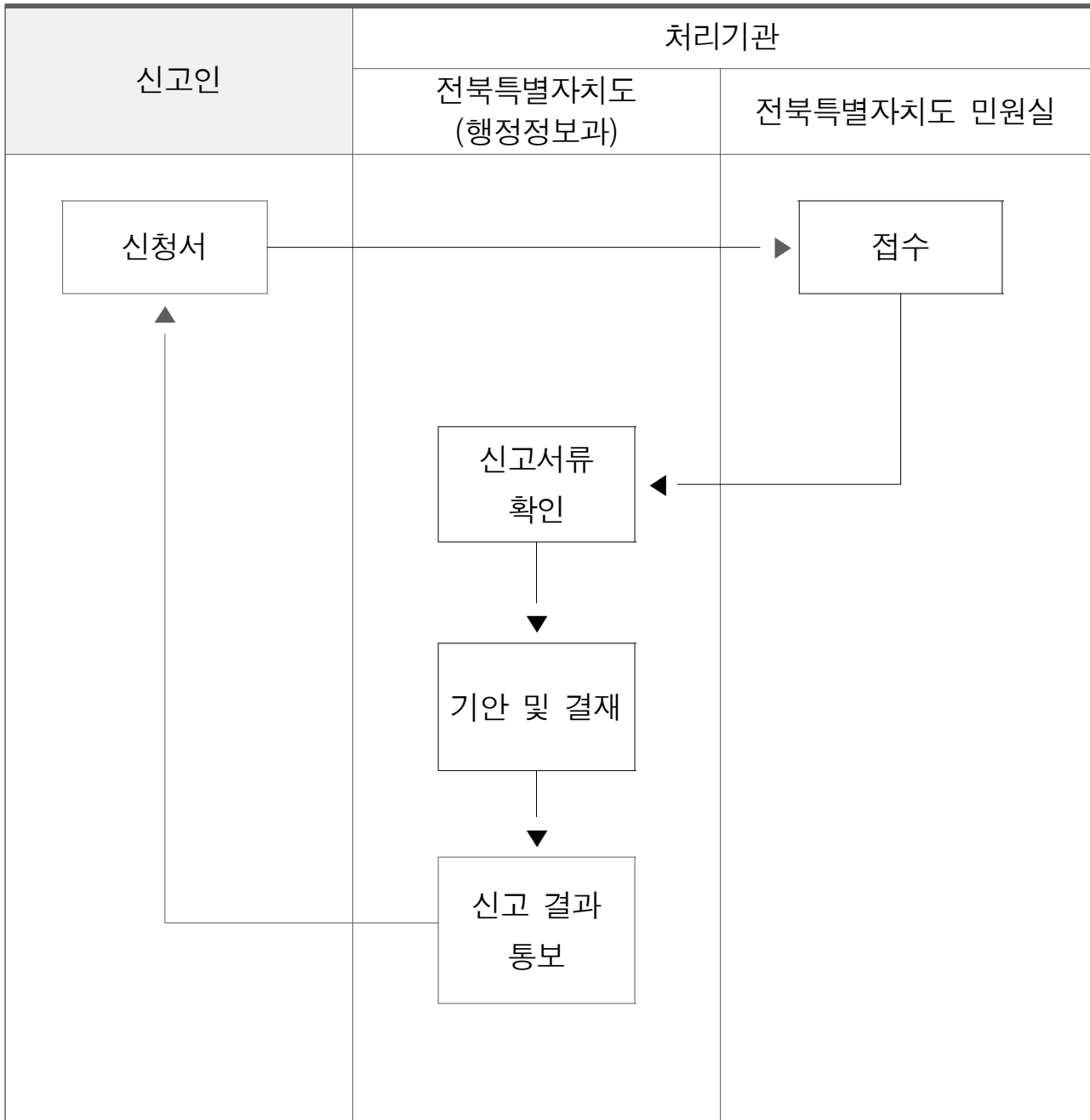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목 적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제도 도입	
적용시기	◆ 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	
신 고 자	◆ 발주처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	
신고시기	◆ 해당 공사가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접수	◆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민원실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063-280-2256) >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063-280-3134)	
수 수 료	◆ 무 료	
처리기한	◆ 배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접수일로부터 7일 ◆ 배치확인서 발급 신청 : 접수일로부터 3일	
구비서류	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②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③ 공사감리용역계약서 1부 ④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감리원이 2개 이상의 현장 감리를 하는 경우) ⑥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발주자의 소속 직원이 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3항(감리원 배치현황 사·도에 신고) ○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의2(감리 배치기준 위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2(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2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 모든 공사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법 제8조)  
단, 일부 예외도 인정한다. (영 제8조)

#### ◆ 발주처 자체 감리

구 분	해당 내용
시행령 제8조 제2항	①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 ※ 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적합한 감리원 기술 등급을 보유한 소속 직원에 한함

#### ◆ 예외 공사

구 분	해당 내용
시행령 제6조	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u>경미한 공사</u>
	②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③ 통신구설비공사
	④ 기존 설비의 대·개체 공사로서 설계도면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공사
시행령 제8조	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b>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b> 공사
	⑥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b>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b> 공사 ※ 총공사금액은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
	⑦ <b>6층 미만</b> 으로서 <b>연면적 5천㎡ 미만</b>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등도 연면적에 포함
	⑧ 대·개체 외의 신설 부분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⑨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 경미한 공사 (영 제4조)

구분	해당 내용
①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②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구내방송 및 CCTV 설비공사
③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④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LAN 선로 증설공사
⑤	<p>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 LAN선로 설비공사는 제외]</p> <p>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p> <p>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p> <p>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p> <p>라.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방송·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p> <p>마. 하드웨어 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b>소프트웨어 관련비</b>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p>
⑥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⑦	<p>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p> <p>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p> <p>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p> <p>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p>
⑧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 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4 감리원 배치기준 [시행령 제6조의3]

- ◆ 용역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착공 전 감리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공사 규모(총공사금액)	감리원 자격기준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특급감리원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초급감리원 이상

- ※ 감리원 배치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최초 총공사금액의 10% 이상 변경될 경우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한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5 감리원 1명이 둘 이상의 공사 감리가 가능한 경우

- ◆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분	해당 내용
①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②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6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벌칙[시행령 제6조의3]

관련법규	해당 사항	벌칙
법 제75조 1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5조 2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6조 3호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한 자	벌금 500만원 이하
법 제76조 3의2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벌금 500만원 이하
법 제78조 제1항 1의2호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50만원